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현장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공청회장을 가득 메워,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할 수 있었다.

현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날 전형률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가축분뇨에 따른 오염을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수변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라 하고, “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조치 등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분이 강화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선 당초 입법예고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나왔다. 가축분뇨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위반 또는 입지제한지역에 설치 시 내려지는 폐쇄명령 조치 유예기간이 2년에서 3~5년 유예로 수정됐다. 또 가축분뇨의 배출과 수집·운반, 처리를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의 경우 일괄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되면 축산농가의 설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순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서는 축사 및 배출시설 허가,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축사 이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또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 시행시 당장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입지제한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순철 부회장은 “가설건축물 적용범위와 건폐율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축산현실을 반영해 갈바눔 등 지붕재질과 콘크리트 바닥재질을 가설건축물 적용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1회 우수상

유철식 충남 흥성군 환경지도담당은 “흥성군을 기준으로 말하면 무허가 축사의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즉각적 행정처분을 강행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해 무허가 축사에서 생산된 가축의 유통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4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축산농가의 소득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과징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이사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농가의 경우, 노령화 및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으로 직접 입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법을 위반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몰려 무허가 축사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공청회장 뒤편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라는 피켓을 들고 환경부에 항의 의사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폐쇄명령 유예기간은 입법예고안보다 늘려 3~5년으로 했는데 더 늘리는 것은 난감하다”며, “하지만 업계의 어려움도 있으니 일반농가는 1년 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하향조정에 대해 그는 “한도액이 1억원이지만 대부분의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로 나오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하향 검토도 가능하지만 그럴 땐 경고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